

광주직할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

광주직할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
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중 "조치"를 "조치명령"으로 한다.

안 부칙중 "1994년 7월 1일"를 "공포후 15일이 경과한날로"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 (적용범위)</p> <p>이조례는 법제15조제4조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광주직할시서구청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원재활용추진을 위한 <u>조치</u> 불이행자및 법제16조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이행등 <u>조치</u> 불이행자에게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조례는 <u>1994년 7월 1일부터</u> 시행한다.</p>	<p>제2조 (적용범위)</p> <p>-----</p> <p>-----</p> <p>-----</p> <p>----- <u>조치명령</u> -----</p> <p>----- <u>조치명령</u> -----</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u>공포후 15일이 경과한날로</u> -----</p>